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1999. 10. 11.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10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65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 ('99.10.1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이 동 호

가. 개정이유

'95.12. 6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의 종류가 시도·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 구도 노선인정공고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시 기금 및 구 기금으로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우리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함. (안 제3조)
-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제1항)
-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굴착을 하는 등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토록 함. (안 제4조 제2항)
-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해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제3항)

-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제정조례안은 '95. 12. 6. 도로법 제17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의 종류가 시도와 구도로 구분되고,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의 노선인정공고가 '99. 3. 31. 공고되었고, 마포구도의 노선인정공고가 '99. 7. 10. 공고됨에 따라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도에 관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마포구가 직접시행하는 공사나 행위로 인한 도로 굴착을 제외하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직접,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다만, 마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동 조례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징수하고 있는 바, 시도와 구도를 구분하지 않고 징수된 부담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으로 서울시장이 관리·운영하였으나 동 조례안이 확정, 시행되면 마포구도와 관련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마포구청장이 관리·운영하게 되겠으며, 부칙 안 제1항에는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마포구청장이 구도를 최초로 인정·공고한 날인 '99. 7. 10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 : 도로굴착복구 공사시행은 누가하며, 굴착후 복구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답변요지(이동호 토목과장) :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원인자는 비용만 부담하며, 굴착복구기간은 당일 굴착은 당일복구가 원칙임.
- 질의요지(홍성환 위원) : 도로굴착 후에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은 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 답변요지(이동호 토목과장) : 단기간내에 굴착복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시도, 구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답변요지(이동호 토목과장) : 시도는 20m 이상, 구도는 20m 이하 도로를 말함.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도로굴착복구비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이동호 토목과장) : 차후 체납 발생시에는 도로복구 시행자에게 굴착을 불허하는 제재등을 통하여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굴착복구에 대한 현장감독은 누가 담당하는가?
- 답변요지(이동호 토목과장) : 체신, 한전, 도시가스회사에 복구에 대한 감독자가 있고,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도 굴착복구를 총괄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굴착복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기 바람.
- 답변요지(이동호 토목과장) : 관리 감독에 미진한 점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9. 9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95. 12. 6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의 종류가 시도,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 구도 노선인정공고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이 시 기금 및 구 기금으로 분리되어 운영 됨에 따라 우리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할 때에는 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토록함(안 제3조)

나.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 굴착을 하는 등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토록함 (안 제4조제2항)

라.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해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 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3항)

마.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또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4항)

3. 재정 근거

- (1) 도로법(1999.2.8 법률 제5914호) 제64조
- (2) 지방자치법(1999.8.31 법률 제6002호) 제15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의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1에 의하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원인부담금의 환부 및 추정)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괴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및 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로법 제17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최초로 인정·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제1항에의한 이조례 적용 당시 종전의 규정인 서울특별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매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 표준 최적구매 - 1 : 0.1(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괴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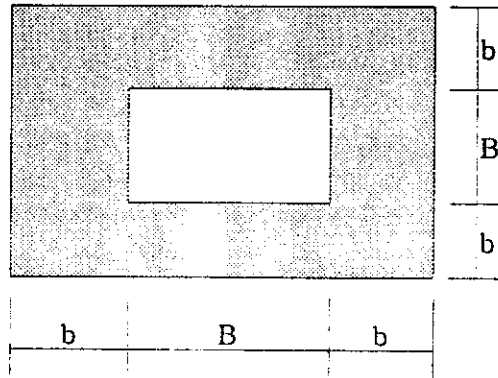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타일류	무수성아스콘, 아스팔트,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괴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커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컷타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 사리도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 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 구간 ○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괴부분 복구비	직접손괴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포장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괴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괴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괴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괴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비고 : ① 보도의 굴착은 굴착잔여 총 폭이 1m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괴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 간접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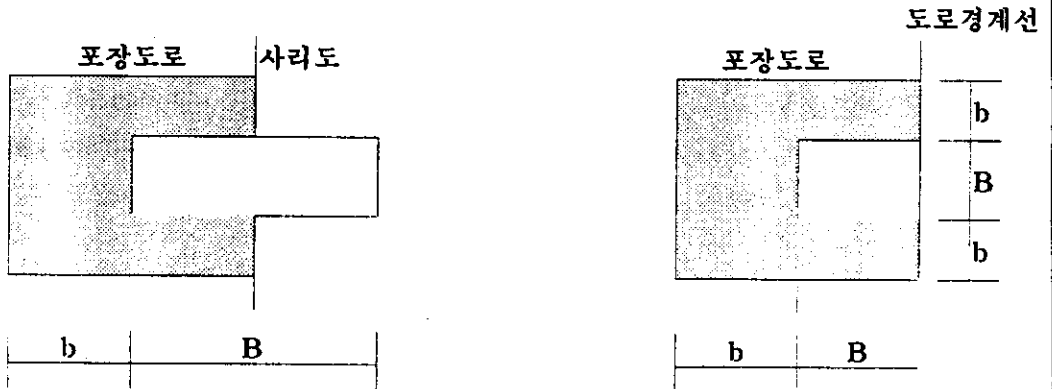
3. 굴착폭(B), 간접손채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채영향(b)

(1) 표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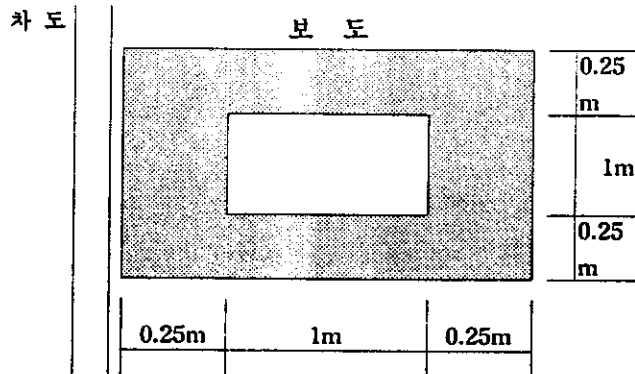


(2) 사리도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아스팔트, 콘크리트)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보도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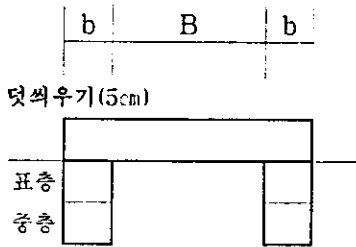
보차도경계블록(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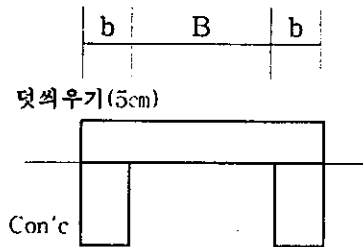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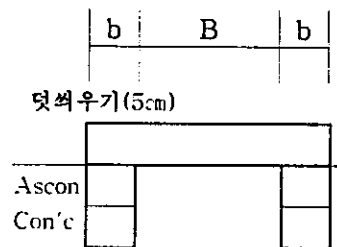
①아스팔트



②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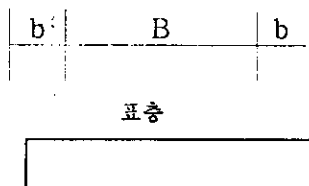


③아스팔트 덧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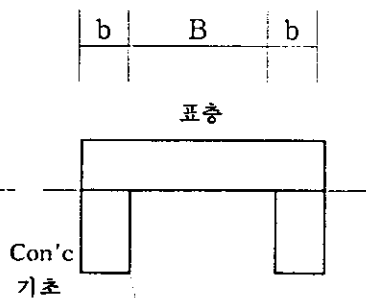


(2)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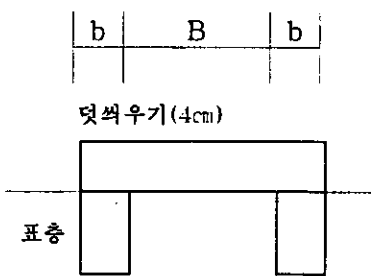
①블록류



②타일류



③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보·차도경계블럭(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 - 1	표층 : 5cm 보조기층 : 15cm 보조기층 : 20cm 보조기층 : 40cm	폭 20미터이상 도로	
	A - 2	표층 : 5cm 보조기층 : 7.5cm 보조기층 : 20cm 보조기층 : 30cm	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 - 1	표층 : 20cm 보조기층 : 20cm	폭 6m이상 도로	
	C - 2	표층 : 15cm 보조기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CA - 1	표층(아스콘) : 5cm 표층(콘크리트) : 20cm 보조기층 : 20cm	폭 6m이상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 인 경우
	CA - 2	표층(아스콘) : 5cm 표층(콘크리트) : 15cm 보조기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보 도	일반보도블록	표층 : 6cm 모래 : 3cm 보조기층 : 10cm	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 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 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소형고압블록	표층 : 7cm 모래 : 3cm 보조기층 : 10cm		
	오나멘트타일	표층 : 4.5cm 풀탈(1:3) : 3cm 콘크리트기초 : 5cm 보조기층 : 10cm		
	투수성아스콘	표층 : 4cm 기층 : 10cm 모래 : 5cm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		서울특별시마포구가 유지관리 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 ①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커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마포구)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